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준비 돕는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및 환경연구원 맞손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 지원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 개발 기관 협업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2월 13일 에이치제이(HJ)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감축사업 승인에서 감축실적 발급에 이르는 절차 및 제도의 구축,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기 위한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 지원 과정을 제공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감축사업 추진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과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하여 개도국에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지원 과정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분야 전문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며, “환경부는 이 지원 과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감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한국형 레디니스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이서현 (044-201-6571)
		담당자	사무관	나욱종 (044-201-6563)



붙임 1 한국형 레디니스 업무협약식 개요

□ 목적

- 레디니스 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상국 파리협정 6조 이행기반 준비 및 ITMO 확보를 위해 국내 소속·산하기관 간 한국형 레디니스 협력체계 구축

□ 체결식 개요

- (일시) '25. 02. 13.(목), 11:00 ~ 12:00
- (장소)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A룸(광화문역 6번 출구 광화문빌딩 20층)
- (참석) 환경부, 환경과학원, 온실가스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 (서명자)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및 환경연구원 6명
 -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 온실가스정보센터장
 - (소속기관) 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업본부장
 - (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10~11:20	10'	인사말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11:20~11:40	20'	인사말씀	각 기관 (MOU 서명자)
11:40~12:00	20'	MOU 체결식 및 사진 촬영	환경부, 각 기관

붙임 2 한국형 레디니스 업무협약서(안)

개도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업무협약서

환경부는 한국형 레디니스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개도국에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하 "한국형 레디니스")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지구적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있는 한국형 레디니스를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을 신속하게 국내로 이전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NDC)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각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한국형 레디니스 관련 연구 수행 및 보유데이터의 연계·공유
2. 한국형 레디니스 마련 방안 도출
3. 한국형 레디니스 사업 발굴 및 활용 모델구축 추진 협업
4. 한국형 레디니스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5. 한국형 레디니스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협력
6. 기타 각 기관이 합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
 - 가.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 검·인증 관련
 - 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국가 레지스트리, 국가 보고서 관련
 - 다. 한국환경연구원 : 국제감축사업 제도 관련
 - 라. 한국수자원공사 : 물분야 국제감축 관련
 - 마. 한국환경공단 : 환경건전성, 기후·환경분야 감축사업 관련
 - 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폐기물 분야 국제감축 관련

제3조(정보교환) 각 기관은 제2조 상의 협력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공유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각 기관은 협력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 업무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과 이행과정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기타 필요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자 상호 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는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본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각 기관 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연장한다.

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본 협약서는 6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